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-19호

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, 「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, 「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, 「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3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조례안 예고

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나.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다. 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라.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조례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

가.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상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「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중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
- 2) 주요내용: 부서 폐지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(제3조제1항제2호)

나.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 제1항에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
- 2) 주요내용: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비율을 당초 2배에서 5배로 수정(안 제6조)

다. 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「2023년 상반기 상주시 행정기구 개편계획」에 따라, 「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되면서 ‘담당관’이 모두 ‘실’로 변경되어, 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도 이를 반영
- 2) 주요내용: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중 ‘담당관’을 ‘실장’으로 변경(안 제2조)

라.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상된 금액을 반영
- 2) 주요내용: 월정수당 인상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7일까지 상주시의회의회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oym9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6419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7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
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
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_____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